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년월일 : 2013. 6.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의 보상금을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 피해까지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퇴치에 따른 자율 구제단(救濟團)운영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명피해 보상 기준(안 제7조)
- 나. 인명피해 보상 지급 제외(안 제8조)
- 다. 농작물 등 피해 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안 제10조)
- 라.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외(안 제11조)
- 마.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사.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안 제15조)
- 아. 야생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입법예고(2013. 5. 3 ~ 5. 25)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안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의 보상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활동,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퇴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 피해"란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다음부터 "농작물 등"이라 한다.)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야생동물 때문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한다.

제2장 피해 신고와 보상 절차 등

- 제4조(피해 신고와 조사 등) ① 야생동물 때문에 신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 지역 이·통장과 피해자(유족 포함)가 현장에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충주 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 지급 절차) ①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피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충주시 야생 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피해 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시장은 다시 심의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⑥ 보상금은 피해 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 농작물 등은 7월 말까지 지급한다.

제3장 인명 피해 보상

제6조(지급 대상) 인명 피해 보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제2조제2호의 유해 야생동물에 직접 신체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한다.

제7조(보상 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보상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사망자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하되, 사망 전의 치료비는 제1항을 따른다.

제8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수렵 활동 중에 본 피해(다만, 제15조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에 본 피해는 제외)
2. 피해자 본인의 전적인 과실 때문에 본 피해
3.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다가 본 피해
4. 의료기관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미리 받았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했을 때

제4장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9조(피해 농지 면적 기준) 농민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농작물 등의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피해 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 ① 피해 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농작물 등은 농작물의 생육 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을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피해 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피해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는 연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경음기(警音器) 설치 등 피해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만 지급한다.

제11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1. 총 피해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
2. 총 피해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때
3. 법령 등에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던 중에 본 피해일 때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5.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금에 상응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았을 때
6. 해당 피해에 대해 타 보험사 등으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받았을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했을 때

제5장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실·국장 또는 실·과·소장

2. 그 밖에 야생동물과 농업 등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 주사가 된다.

⑦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산출이 어려운 제10조제1항의 피해액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유해야생동물의 퇴치 등

제15조(유해 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율 구제단(救濟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수렵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율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임시 보호소 운영) ① 시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보호소(다음부터 "보호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보호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호소 위탁 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8조(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인명 피해 보상 신청과 처리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신고와 처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명 피해 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피해 발생 현황	피해지역			
	발생일			
	가해동물명			
	피해내용 (발생경위)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 갖출 서류 :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피해 농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피해 현황	피해 지역			
	피해 농작물		가해 동물명	
	피해 기간	(일간)		
	경작지 면적	m ²	피해 면적	m ²

「충주시 야생동물에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갖출 서류 : 없음

[별지 제3호서식]

피해 실태 조사서(제4조제2항 관련)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사 결과	인명	피해 내용		가해동물명
		피해 경위		
	농작물 등	피해 지역		평균 피해율
피해 농작물			가해 동물명	
경작지 면적		㎡	피해 면적	㎡
보상 제한 여부	인명	수렵 활동 중의 피해 해당	여(), 부()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 해당	여(), 부()	
		금지구역 무단 입산 해당	여(), 부()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 해당	여(), 부()	
		그 밖의 보험금 미리 수령	여(), 부()	
		그 밖의 제외 사항		
	농작물 등	총 피해액 10만원 미만 해당	여(), 부()	
		피해 면적 100㎡ 미만 해당	여(), 부()	
		경작 금지 지역 해당	여(), 부()	
		다른 법령 보상 지원 해당	여(), 부()	
피해 방지 시설 설치 해당		여(), 부()		
그 밖의 제외 사항				
그 밖의 사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통·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

충주시장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 사진 붙임

[별지 제4호서식]

피해 보상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 상황	피해 지역			
	피해 구분		가해 동물명	
	피해 기간	. . . ~ . . .	(일간)	
	피해 금액		피해 내용	

「충주시 야생동물에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	수수료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없음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 입은 농작물 등의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인명 피해 제외)	
5. 인명 피해는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등 치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피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제5조제2항 관련)

피해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명 피해	피해 내용	가해 동물명	
농작물 등 피해	피해 지역		
	피해 농작물 (내용)	가해 동물명	
	경작지 면적	(m ²)	
	피해 면적	(m ²)	
보상금액	원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7일

피해 보상금 청구서 (제5조제3항 관련)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상금 산정결과	보상금액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인명 피해 보상 신청·처리 대장

(제18조 관련)

연번	피 해 자			피 해 발생일	가 해 동물명	피 해 내 용	보상금 신청액	처 리 결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지급일	미보상 (사유)

[별지 제8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신고·처리 대장(제18조 관련)

연번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자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조사와 피해액 산출내용										처리 결과	
	성명	주소	신고일	피해 농경지	피해 작물	가해 동물명	경작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율 (%)	보상 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 비율 (%)	산정 보상액 (원)	보상액 (지급일)	미보상 (사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11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 예방활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 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